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고 제2015-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지원 항목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장애아동 교육 및 운영비 신설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우편번호 : 136-861, 전화 : 2241-5876, FAX : 2241-66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고 제2015-7호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 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현행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확대하고,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판매대 등 선정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안 제1조)
- 나. 우선계약대상 추가 (안 제1조)
- 다. 매점규모 단서 삭제 (안 제2조)
- 라. 계약의 해지기준 신설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우편번호: 136-861, 전화: 2241-5876, FAX: 2241-66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고 제2015-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 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임신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전용주차장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우편번호: 136-861, 전화: 2241-5876, FAX: 2241-66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고 제2015-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4조)

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제6조)

마.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

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의 통제와 공사현장에 대한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 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우편번호: 136-861, 전화: 2241-5876, FAX: 2241-66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